■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2 . 13.>

법 무 부

수신자 강성준 귀하 (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2층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유)

제 목 **정보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7687610	**접수일** 2021. 04. 08.

청구 내용	2020년 이후 현재까지 귀 기관이 산하 교정시설에 하달한 코로나19 방역 지침(개정되어 현재 효력이 없는 과거 지침 포함) 관련, 1) 공문 제목, 문서번호, 시행일, 소관부서, 내용공개여부(공개, 일부 비공개, 비공개로 구분) 2) 위 공문의 사본 ※참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의 붙임자료가 있을 경우 붙임자료도 함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내용	안녕하십니까! 법무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청구내용】 2020년 이후 현재까지 귀 기관이 산하 교정시설에 하달한 코로나9 방역지침(개정되어 현재 효력이 없는 과거 지침 포함) 관련, 1) 공문 제목, 문서번호, 시행일, 소관부서, 내용공개여부(공개, 일부 공개, 비공개로 구분) 2) 위 공문의 사본 【결정내역】

	○ [공개] 1) 공문 제목, 문서번호, 시행일, 소관부서 ○ [비공개] 1) 내용 및 2) 위 공문의 사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구 정보는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합니다. ※ 청구정보에 대한 결정내용에 더 문의하실 내용은 법무부 의료과 (☎ 02-2110-36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 일시	2021. 04. 19. 14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② 우송료	③ 수수료 감면액	계(①+②-③)
	0원	0원	0원	0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법무부장관

교감(교정직렬)	**류선용**	사무관	**오선호**	서기관	**박경선**

협조자

시행 의료과-10273(2021. 04. 19.)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중앙동) 법무부

전화번호 02-2110-3616 팩스번호 02-- / jajnm1@moj.go.kr / 공개 구분

유의 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 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시행일	제 목
의료과-809	2020. 1. 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계획 (주의단계)
의료과-990	2020. 1. 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계획 (경계단계)
의료과-2177	2020. 2. 24.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 발령에 따른 대응지침 (심각단계)
의료과-3639	2020. 3. 16.	코로나19 관련 교정민원콜센터 감염관리지침
의료과-4997	2020. 4. 8.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한 외부의료시설 진료지침
의료과-5604	2020. 4. 20.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절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교정시설 방역 세부지침
의료과-6345	2020. 5. 6.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교정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의료과-12909	2020. 8. 28.	코로나19 교정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처우 조정표
의료과-16531	2020. 11. 6.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수용자 처우 조정표 개편
의료과-18261	2020.11.30.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의료과-18261	2020. 11. 30.	교정기관 코로나19 격리치료시설 운영 지침
교정의료과-22816	2020. 12. 17.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내 직원 방역 강화 방안
의료과-19424	2020. 12. 30.	전국 교정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방역관리 강화방안
의료과-159	2021. 1. 4.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격리해제 기준
의료과-1043	2021. 1.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교정시설용 대응 지침
의료과-1896	2021. 1. 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교정시설 대응 매뉴얼
의료과-2246	2021. 1. 19.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
의료과-4710	2021. 2. 1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자 처우조정표 개선